

# 국무조정실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 전화(02)734-8791~2 / 전송(02)733-6634

규제개혁3심의관실 심의관 구본영 과장 정하영 담당자 임상준 사무관

문서번호 국무규제 05090-

시행일자 1999. 5. 7.

받음 받는 곳 참조

취급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
보존			
조정관	●정강정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
심의관	3분야	기획심의관	기획심의관
과장	정하영		
기안	★임상준		협조

제목 규제개혁 후속조치 조속이행 및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지시(국무총리지시 99-(으))

1. 행정규제기본법 제34조에 의거, '98규제정비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실태 및 규제집행실태에 대한 현장점검('99.4.19~24)을 실시한 바, 상당수 기관에서 규제개혁의 추진의지가 부족하거나 법령 제·개정사항의 이행지체 등 부진사례가 많이 지적되었음.

2. 금번 현장점검결과를 불임과 같이 통보하면서, 규제개혁 후속조치의 조속한 이행과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추진을 아래와 같이 지시하니, 기존규제의 절반수준을 폐지하는 역사적인 규제개혁의 성과를 국민들이 하루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 - 아래 -

- 각급행정기관의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신고센타』 등의 운영과 관련
  - 각급행정기관에서 설치·운영중인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에 직능대표성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원을 1/2이상 위촉토록 하고, 신설·강화규제 심사 및 규제정비계획 추진 등이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활성화방안을 강구할 것
  - 『규제신고센터』를 내실화하여 현장중심의 규제개혁과제를 적극 발굴토록하고,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과제는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송부하여 신속히 처리토록 할 것
- 규제의 신설·강화 사전심사와 관련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10조 내지 제16조에 따라 규제신설·강화시 자체 심사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심사 등 법정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 각급 행정기관별 규제총량이 증가되지 않도록 규제신설을 최대한 억제할 것

문서번호 국무규제 05090 -

- 규제개혁 후속조치 조기이행과 관련
  - '98 정비계획에 따른 법령 · 조례 · 규칙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 개정사항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토록 하고,
  - 규제의 집행기관은 자체교육 등을 통해 폐지 · 개선된 규제가 계속 운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규제의 법규형식 구비와 관련
  - 행정규제는 법률 · 시행령 · 총리령 · 부령 · “고시등”(고시 · 공고 · 예규 · 훈령)과 조례 · 규칙의 형태를 갖추도록 한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동시행령 제2조 및 부칙 제4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고시 · 공고 · 예규 · 훈령의 형태가 아닌 (규제가 포함된) 하위규정은 “고시등”의 형태로 조속히 변경 완료토록 할 것
- 금번 점검결과 지적사항 처리와 관련
  -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은 해당부처 기관장 책임하에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또는 처리계획)를 '99.5.31까지 제출할 것
  - 폐지된 규제를 계속 집행한 사례, 위원회 사전심사없이 규제를 신설 · 강화한 사례 등은 사안의 경증을 따져 관련자를 염중문책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 미등록된 규제 및 법정절차를 결하고 신설 · 변경된 규제는 폐지를 원칙으로 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할 것
- 행정자치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 등 지시내용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충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방향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취합 보고할 것

붙 임 : 1. 규제개혁이행실태 점검(1차)결과 1부  
2.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방안. 끝.

## 국 무 총 리

받는 곳 : 가(13~20, 31~47, 51~55, 57~67)

# 規制改革 履行實態 點檢結果(1次)

'99. 5

國 務 調 整 室

## - 目 次 -

I. 點檢概要 .....	1
II. 總評 .....	2
III. 分野別 點檢結果 .....	6
1. 일선기관의 규제개혁 추진상황 .....	6
2. 신설·강화규제의 억제노력 미흡 .....	8
3. 누락규제 발굴 .....	10
4. '98규제정비계획 대비 변경사항 .....	11
5. 조례·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상황 .....	12
6. 법령미근거 규제 운용실태 .....	14
7. 공무원의 규제집행방식 개선 실태 .....	15
8. 기타 건의사항 등 .....	17
IV. 措置計劃 .....	18

# I. 點檢概要

## □ 點檢 目的

- '98년 규제정비계획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실태 및 일선행정기관의 규제집행실태를 확인·독려, 규제개혁의 성과를 조기에 확산·정착시키고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지수를 제고하기 위함

## □ 點檢 概要

- 점검기간 : 99.4.19~24 (6일간)
-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 7개 부처
    - \* 행자부, 문광부, 농림부, 산자부, 환경부, 건교부, 식약청
  - 지방자치단체 : 3개 시·도 및 10개 시·구
    - \* 서울시(종로구, 성북구, 강남구, 송파구), 인천시(남구, 부평구), 경기도(의정부시, 남양주시, 용인시, 군포시)

## □ 重點 點檢項目

- 부처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실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규제신설 사례 등 신설·강화규제의 엄정한 심사 여부
- 법령 제·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법령정비 내용에 관한 지방자치단체로의 조속한 전파 등 '98 규제개혁의 후속조치 추진상황
- 폐지·개선된 규제의 교육, 행정집행 매뉴얼 작성·시행 등 일선행정기관의 규제집행방식 개선실태
- 폐지된 법령미근거 규제의 계속운용 여부, 부정부폐와 연결되는 관행적 행정규제 운용 사례 등

## II. 總評

### □ 一線行政機關의 規制改革 推進基盤 構築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규제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신고센터 등을 구성·운영하는 등 전반적인 규제개혁 추진체제는 구축되었으나
  - 일부 일선행정기관에서는 기관장의 개혁의지가 미약하여 규제 정비가 형식적으로 추진되고, 규제신고센타 역시 홍보부족 등으로 처리실적이 전무한 등 규제개혁의 역사적 의미와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저조

### □ 新設·強化規制의 抑制努力 未洽

- 점검대상 중앙행정기관 모두가 자체 규제개혁협의회 등을 구성하였으나, 위원회의 민간인 구성비율이 낮고 대표성이 부족하며, 서면심사 위주로 운영되어 위원간 토론이 없는 등 자체심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대부분
- 특히, 행정규제기본법상 모든 신설·강화규제는 자체심사 및 규제 개혁위원회의 법령심사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일부기관에서는 법정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제가 신설 또는 강화됨
  - \* 무심사 규제신설·강화사례 : 행자부, 농림부, 산자부 등 5건
    - 例 : 『환경농산물품질관리요령』 제정시 농약잔류기준, 자료비치 의무, 장부열람요구 등의 규제를 규제위 심사 없이 신설

## □ '98整備計劃 後續措置 不振

- 규제개혁위원회가 폐지키로 의결한 규제중 부처의 입법추진 과정에서 당초계획과 다르게 변경된 사항이 상당수 있으며 이중에는 충분한 검토 없이 부처 임의로 수정한 사례도 있었음
  - \* 부처 입법과정에서 수정 변경된 규제 : 건교부, 환경부 등 5개부처 82건
    - 例 : 농지법상 농지의 소유거래에 관한 출입조사 규제는 당초 폐지 키로 의결되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재심사 없이 “보고 및 자료제출” 폐지하고 “공무원의 출입조사” 규제는 존치
- '98.8.31 기준으로 규제사무에 대한 일제전산등록을 실시하였으나 아직까지 상당수의 규제가 등록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
  - \* 규제등록 누락사례 : 건교부 190여건, 산자부 13건, 농림부 6건 등
    - 例 : 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 건설기계소유자 등의 보고·검사 등

## □ 現場行政에의 波及 不振

- 법령 제·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규칙등 하위규정을 정비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이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는 등 규제개혁 성과파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 일부 중앙부처의 경우 하위규정 정비상황에 대한 지속적 점검이나 관련교육실시 등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일선행정기관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

- 지자체에서도 법령개정에 따른 각종 업무편람 등의 정비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직원교육이 부실하여 이미 폐지된 규제를 운용하는 사례가 다수 지적됨
- \* 폐지규제 계속운용 사례 : 의정부시 등 7개 지방자치단체 11건
  - 例 : 건축법령 개정('96.1)으로 건물 증개축시 구비서류가 감소되었으나 종전의 규정에 의해 불필요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을 계속 요구

## □ 法令未根據規制 運用

- 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법령 미근거규제를 정비하도록 여러차례 지시하였고 실태점검(99.1) 까지 실시하였으나
  - 기 파악되지 않은 법령미근거 규제를 현재까지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자체적인 추가발굴 정비 노력 및 지속점검이 필요
- 특히, 감사를 의식한 보신행정 및 행정편의주의로 법령상 근거도 없이 과다한 민원서류 징구 및 불필요한 동의·협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수 지적됨
- \* 법령미근거 규제 운용 사례 : 식약청, 서울시 등 11개 기관 30건
  - 例 : 보육시설 설치신고시, 주변주민의 『보육시설 설치동의서』를 법령 근거없이 징구

### III. 分野別 點檢結果

#### 1. 一線行政機關의 規制改革 推進狀況

-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시·구 등 기초 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규제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규제 개혁위원회 및 규제신고센터 등을 구성·운영하는 등 규제개혁을 위한 전반적 추진체계는 구축된 것으로 판단
- 또한 규제개혁의 성과 등에 관한 책자발간, 언론매체, 전광판 등을 이용한 홍보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등 규제개혁 추진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 일부기관에서는 위원회만 구성되어 있는 상태로 개최실적이 거의 없고, 정비계획도 상급기관에서 통보된 사무를 중심으로 수립하는 등 형식화되어 있으며, 규제신고센타 역시 홍보부족 등으로 처리실적이 전무한 기관도 있음

#### < 우수사례 >

- 민간중심의 규제개혁위원회(15명중 민간인 13인)에서 총9차에 걸쳐 기존규제 및 신설규제를 심사하고, 누락규제에 대한 발굴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당초 규제수(4,060건)이외에 1,430건을 추가 발굴 정비(서울시)
-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자치구 규제개혁 표준정비안”을 마련, 자치구간 규제행정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서울시)
-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혁파위원회”로 확대개편(74명중 민간인 55명)하여 자체규제사무 12,053건을 발굴 정비하고, 규제 개혁 우수시군에 대한 인센티브(3억원) 도입(경기도)

- 인터넷 규제신고센타에 올려진 민원이 타 기관과 관련된 경우 중간회신을 하는 등 1~2일안에 답변이 신속히 이루어지며, 담당 공무원의 답변내용 역시 매우 친절하고 성실함(인천시)
  - \* 규제개혁업무 담당공무원(6급 이의귀, 女)이 혼자서 많은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규제신고센터를 내실있게 운영
- 부시장과 시의회의원이 공동위원장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3차에 걸쳐 465건의 규제를 발굴·정리하고, 부시장이 규제개혁목표를 70%로 정해 개혁을 독려하는 등 기관장 관심 지대(남양주시)

#### < 부진사례 >

- 자체규제사무 발굴 정비실적이 전무하고 상급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규제사무만을 관리하고 있으며, 규제개혁홍보 및 직원교육 미흡 등 전반적인 규제개혁 추진이 부진하고 기관장 관심도 미약(의정부시)
- 위원회 구성안만 마련한 채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위원회에서 실제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인천 남구, 군포시)
- 홍보부족으로 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되는 민원이 전무하여 운영 미흡(군포, 용인, 종로, 성북, 인천남구)
- 기관장의 의지 및 관심도에 따라 자치구별로 규제발굴 실적 및 정비수준이 불균형을 보이고 있음(서울시)
  - 규제발굴 : 강서구 354건, 종로구 215건, 성북구 129건
  - 정 비 율 : 성동구 75.3%, 종로구 67.0%, 성북구 53.5%, 구로구 32.9%

## 2. 規制의 新設・強化 抑制努力 未洽

- 점검 대상 중앙행정기관 모두가 대부분이 자체 규제개혁협의회 등을 구성하고 신설·강화규제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진행하고는 있으나
  - 위원회의 민간인 구성비율이 낮고, 그나마 산하연구소 연구원 등으로 구성되어 시민단체·이해관계인의 참여가 배제되는 등 대표성이 부족함
- 또한, 심사를 서면으로 대체함으로써 위원간 활발한 토론이 없는 등 자체심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발언요지 등 기록 관리도 부실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
- 특히, 행정규제기본법상 모든 신설·강화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고시·훈령 등 하위규정은 대부분 부처의 자체심사 조차 거치지 않고 규제가 신설됨
- 일부기관에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하면서도 규제개혁위원회의 법정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도 지적됨

### < 우수사례 >

- 조직관리, 지방행정, 소방행정 등 11개분야별 소위원회를 민간위원 85명, 국장8명 등으로 구성하여 분과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참여자 주요 발언요지 등을 기록관리(행정자치부)

## < 부진사례 >

- 자체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6명을 모두 산하연구소 연구원으로 위촉 (건설교통부)
- '98.6 이후 고시와 훈령은 신설·강화에 대한 자체심사나 규제개혁 위원회의 법령심사를 전혀 받지 않음(농림부)
- 자체심사위원회가 서면심사로 대체되어 심사일정 및 심사참여자는 기록되어 있으나 발언요지 등의 기록이 없음(산업자원부)
- 발족당시 1회(98.6)개최후 운영실적이 없고 서면을 통한 심사로 대체 (환경부)
- 전체위원회 개최실적이 없고 규제심사를 기획관리실장과 안전관련 민간위원 1~2명의 심사의견서로 심사를 대신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문화관광부)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법령심사를 거치지 않고 규제를 신설·강화한 사례가 있음
  - 행자부 2건, 산자부 1건, 농림부 2건 등
  - 例 : 『환경농산물품질관리요령』 제정시 농약잔류기준, 자료비치 의무, 장부열람요구 등의 규제를 규제위 심사 없이 신설

### 3. 漏落規制 發掘

- 법령 제·개정후 신설·변경내용을 법정기일(30일)내에 전산등록 토록 한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의 규정은 잘 지켜지고 있으나
- 법령 표본조사 결과 일부기관에서는 법률 전체가 규제사무에서 누락된 사례가 있고 고시·훈령상의 규제도 상당수가 등록에서 누락된 것으로 파악

#### < 부진사례 >

- 규제사무가 포함된 법령 전체가 규제등록에서 누락(건설교통부)
  -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항공 운송사업진흥법
- 일부 법령 및 훈령상의 규제사무가 등록에서 누락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8조 영업장 폐쇄조치, 비료관리법 제24조 비료업자에 대한 명령 등 (농림부 6건)
  - 산업표준법 제26조 인증의 취소, 광업법 제102조의2 광물의 수입 판매부과금, 염업조합법 제48조 해산명령 등 (산업자원부 13건)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3 시공제한, 도시재개발법 제17조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등 (건설교통부 190여건)

#### 4. '98規制整備計劃 對比 變更事項

- 규제개혁위원회가 의결한 '98규제정비계획을 각부처가 추진중에 있으나 일부기관에서 부처의 자체사정이나 부처협의 등의 이유로 당초 계획과 다르게 변경된 규제사무가 발견됨
- 수정·변경과정에서 대부분은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쳤으나, 일부 부처의 자체수정된 규제사무 중에는 충분한 검토 없이 부처 임의로 수정한 사례도 있었음

##### < 부진사례 >

- 98정비계획 대비 변경사항 총32건중 규제개혁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사항은 3건에 불과(건설교통부)
- 농지법제56조의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에 관한 출입조사 규제는 당초 폐지로 의결되었으나, 존치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없이 “보고 및 자료제출” 규제는 폐지하고 “공무원의 출입조사” 규제는 임의로 존치 (농림부)

#### '98계획대비 수정·변경사항

구 분	소계	행자부	문광부	농림부	산자부	환경부	전교부
계	82	9	-	7	7	27	32
법제처 협의시 변경	52	6	-	3	7	15	21
관계부처 협의시 변경	7	-	-	1	-	4	2
부처 자체수정	23	3	-	3	-	8	9

※ 법제처 협의시 수정사항은 대부분 법리상 문제로 자구수정을 하는 등으로, 향후 법제처 관계관이 각 분과위원회에 출석 발언토록 하는 방안 검토예정

## 5. 條例·規則 등 下位法令 整備狀況

- 법령 제·개정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규칙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이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추진 상황을 수시로 보고토록 하고 있으나
  -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규정 정비상황에 대한 중앙부처의 지속적 확인 및 자치단체에 대한 교육실시 등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됨
- 또한 자치단체에서는 중앙부처의 법령정비내용이 통보되는 대로 관련 조례·규칙 등 하위규정의 정비를 추진해야함에도 개혁이 전의 업무관행이 유지되는 사례가 있고, 시행시기 미도래 등을 이유로 준비작업도 소홀

### < 우수사례 >

- 자치단체 관련사무의 정비현황을 시도에 통보하고, 시군 및 관련 기업체를 방문, 하위법령 개정실태와 제도개선 요구사항 등을 파악 제도개선에 반영 (산업자원부)
- 법령개정 즉시 조례·규칙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목록을 작성 통보하고 통보시에 법령개정조항 및 일자, 관련조례, 시행일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시달(행정자치부, 환경부, 농림부 등)
- 규제개혁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중앙부처에서 폐지되거나 정비 확정된 규제사무에 대하여는 조례·규칙 개정이전이라도 즉시 운영을 중단하거나 업무개선 조치(서울시)

## < 부진사례 >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1항2호 개정(99.3)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의무가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대체되었으나 '99.4.21 현재까지 종전의 신청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후속조치 지연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계속 요구(종로구)
- ※ 자동차 등록시 규제개혁으로 폐지된 완성검사증을 요구하는 바람에 민원인이 건교부에 질의확인하는 등 4시간30분이나 등록처리지연 (강남구, 4.26 중앙일보 보도)
- 농약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99.1)되어 농약판매업 등록시 점포 및 창고면적기준 적용을 폐지하였음에도 시에서 집행기관인 읍·면·동사무소에 지침시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남양주시)
- 토지형질변경 허가시 이미 폐지된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소유 농지현황,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서류를 불필요하게 요구(의정부시)
-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관한 법률의 과태료 규정이 개정 ('97.12) 통보되었으나, 시 조례를 개정치 아니하고 동규정을 위반 한 자에게 종전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과태료 부과(의정부시)
- 건축법시행규칙 개정('96.1)으로 건물 증·개축시 구비서류가 필요 없으나, 종전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등을 요구(종로구, 성북구, 강남구, 군포시, 남양주시)

## 6. 法令未根據規制 運用實態

- 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법령 미근거규제를 정비하도록 여러차례 지시하였고, 실태점검(99.1)까지 실시하여 기 파악된 미근거규제는 대부분 정비되었으나
- 아직도 지침·고시 등으로 법령미근거 규제를 운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어 지속적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

### < 우수사례 >

- 기파악된 법령미근거 규제 18건중 17건 정비완료하고,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법령에 상위하여 규정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된 1건의 규제사무는 관련기관에 즉시 집행중단을 통보하는 공문 시달(환경부)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폐지된 법령미근거규제 사례 등을 종합 통보하고 미근거규제를 자체적으로 추가 발굴하여 정비(경기도)

### < 부진사례 >

- 의료기기의 “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의뢰”를 신청한 민원인에 대해 1회에 한하여 보완 지시할 수 있다는 내부규정을 무시하고 기준과 관련 없는 문구수정(열쇠→키, 주스위치→메인S/W) 지시만으로 5차례나 반려(식품의약품안전청)  
※ 해당기관 민원처리행정의 낙후성과 부패소지 의혹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로 지적
- 서울특별시 주요소등록요건및절차에관한고시(97.5)에서 주유소의 등록신청시, 법령에 규정된 서류외에 공동주택 및 학교와의 거리를 측정한 도면을 추가로 제출토록 요구(서울시)

- 토지형질변경 허가시 법령에 없는 피해방지계획서, 원상복구이행 각서를 첨부토록 하고, 허가시 ①차량으로 인한 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 상주, ②강우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배수로 확보, ③민원발생시 피허가자 책임 등 근거없는 조건 부여(군포시)
-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시에 유사한 서명을 반복적으로 날인, 행정사에게 신청하였을 경우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날인을 첨부토록 법령에 근거없는 지침(경기도교행 91153-1660) 운용(군포시, 의정부시)
-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시 생활보호법상 근거가 없는 소득·재산관계 서류를 징구토록 '99 보건복지부지침서에 규정(복지부, 송파구)
- 보육시설 설치와 관련, 보육시설(놀이방) 설치신고시 주변주민의 『보육시설 설치동의서』를 징구하는 사례(강남구)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 규정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무사고기간이 5년이상인 자로 되어 있으나 서울시는 교통정책을 이유로 10년이상 무사고 운전자로 기준 강화(서울시)

## 7. 公務員의 規制執行方式 改善 實態

- 담당공무원이 업무에 대하여 인터넷이나 부처의 교육을 통하여 폐지·개선된 규제의 법령을 숙지코자 노력하고 있으나
  - 각종 민원업무 편람 등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체직원 교육도 부실하여 폐지된 규제를 운용하는 사례가 많았음
- 특히 감사를 의식한 보신행정의 결과로 과다한 민원서류 징구 및 불필요한 동의·협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수 잔존

### < 우수사례 >

-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시행, 구두허가제 실시, 각종인허가 절차 안내 및 업무 투명성 제고방안 시행 등 새로운 규제집행방식 추진 노력(송파구)
- 담당공무원이 업무에 대하여 인터넷이나 교육등을 통하여 폐지·개선된 규제의 법령을 숙지하고 있었고, 도 단위에서 각부처 및 다른 지자체의 규제정비사례 등을 종합하여 시군에 통보함으로써 규제개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경기도)
- 소속공무원에 대한 적극적 교육실시(3~6회) 및 시장지시(8회), 대책회의(4회) 등으로 담당공무원의 업무숙지도가 높음(군포시, 용인시)

### < 부진사례 >

- 동사무소에서는 구청으로부터 건축·세무 등 17개 민원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으나 대다수 동사무소에서 '93년도 서울시에서 제작한 업무편람을 아직까지 지침으로 활용하는 사례(서울시)
- 법령개정에 따라 각종 편람 등을 정비하지 않아 대부분 법개정 전의 구비서류가 명시되어 불필요한 민원서류 징구(의정부시)
- 중간간부(과장)을 대상으로 폐지·개선된 규제의 업무 숙지도를 확인한 결과 변경내용을 숙지하고 있지 못함(송파구, 강남구)

## 8. 其他 建議事項 等

- 중앙부처에서 자치단체로 위임된 규제는 지자체 입장에서 볼 때 규제신설에 해당되지만, 중앙부처에서 이미 규제심사를 마쳤으므로 지자체는 규제영향분석 등 규제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조치(행정자치부, 전북)
  - ⇒ 중앙부처에서 세부적인 규제기준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지자체가 단지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절차만을 정하는 경우에는 지자체는 규제영향분석 등 규제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
    - 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자체에서 조례 등으로 규제를 신설 강화하는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 등 심사가 필요
- 계속되는 법령(하위규정 포함) 정비상황을 관계부처에서 자치단체에 신속·정확히 전파될 수 있도록 조치요망(행정자치부, 경기, 전북)
  - ⇒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정비사항 즉시 통보조치('99.2.25 총리지시 기시달)
- 중앙부처 규제정비시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를 중심 추진해줄 것을 요청(행정자치부, 포천군)
  - ⇒ 시도, 시군구에서 관련분야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규제위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
-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규제업무담당자가 업무변경내용을 신속히 파악하고 규제개혁의 필요성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연찬회 실시 요망(행정자치부, 전북, 대구)
  - ⇒ 중앙단위 및 시도별 연찬회 실시 검토

## IV. 措置計劃

### □ 機關別 規制改革推進體制 運營의 實質化 促求

- 규제개혁추진계획 수립, 자체심사위원회, 규제신고센터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기관장의 개혁의지를 촉구하고, 의정부시 등 규제개혁추진 부진에 대하여는 관할장관이 기관 경고
- 법령 제·개정으로 규제가 폐지되거나 개선된 내용은 즉시 하위 규정에 반영토록 조치하고, 각종 교육 등을 통해 규제집행 방식을 개선토록 지도

### □ 新設·強化規制의 嚴格한 審查

- 부처별 자체규제개혁협의회의 민간위원 1/2 이상 확보 및 이해 관계인 참여 보장 등으로 대표성을 갖추도록 한 지침 성실이행 촉구
- 서면심사보다는 위원간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심사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자체심사의 효율화 도모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불필요하고 졸속적 규제가 신설되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
  - 사전심사 없이 신설·강화된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

### □ 98整備計劃 對比 變更·漏落事項에 대한 規制審查

- 부처 자체사정 등으로 규제개혁위원회와의 협의 없이 임의로 변경된 규제사무 및 규제등록 누락사항 등에 대하여는 규제 개혁위원회에서 신설에 준한 규제심사를 거쳐 존치여부 결정

## □ 法令 未根據規制의 卽時 運用中斷 措置

- 지적된 법령미근거규제는 각 기관장 책임하에 즉시 운용 중단시키고, 부득이 계속 존치시킬 규제도 일단 운용중단후 규제영향 분석 등 규제심사 절차를 거쳐 법령에 근거 마련토록 조치
- 자체 규제신고센타, 지역언론 등을 통해 미근거 규제 발굴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토록 독려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사례를 활용, 법령미근거 규제 발굴·정비

## □ 規制改革의 持續的 推進을 위한 現場點檢 繼續

- 일선기관의 규제집행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개혁성과를 확산시키고 국민의 개혁체감지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상시점검체계 지속 가동
- 차기점검은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합동으로 실시토록 하고, 특히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시·군·구의 현장실태를 집중 점검

## □ 主要 不振事例에 대한 嚴重한 責任 紛明

-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에 통보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 특히, 규제 변경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 및 행정편의 등을 이유로 종전의 규제집행방식을 계속하는 공무원은 엄중 문책
  - 법정심사절차를 결하고 규제를 신설·강화, 규제개혁위원회 의결 사항을 임의로 수정·변경, 민원처리행정의 낙후성과 부패소지 의혹이 있는 저질의 규제집행행태 반복 등

# 現場中心의 規制改革 推進方案(案)

‘99.5

國務調整室

## = 目 次 =

I. 問題의 提起

II. 規制改革 體感指數가 낮은 理由

III. 現場中心의 規制改革 推進方案(案)

1. 規制改革 履行實態 常時 點檢體系 運營
2. 國民提案 및 不便申告에 대한 還流體系 活性化
3. 規制改革關聯 教育의 內實化
4. 對國民 弘報의 積極 推進
5. 規制改革 輿論調查 實施

IV. '99 規制改革의 持續的 推進

<첨 부> 規制改革關聯 新聞 報道內容 및 措置計劃

- ◆ 규제개혁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최근 중앙일보에서는 규제개혁의 현장을 직접 취재, 기획 특집기사로 연재하면서 규제개혁의 성과가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비판을 6회(4.26~5.1)에 걸쳐 게재
  - ※ 「주요 보도내용 및 향후 조치계획」 별첨 참조
- ◆ 이와 별도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지수를 높이고 규제개혁의 성과를 조속히 확산·정착시키기 위하여 상설 점검단을 설치, 제1차 현장점검(4.19~24)을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마련·시행하고자 함.

## I. 問題의 提起

- 지난해 「전체규제의 절반수준 폐지」 등 규제개혁의 성공적 추진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의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임.
- 따라서 올해부터는 그동안 추진해 온 「제도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방식과 아울러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규제 개혁의 성과를 국민들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함.

## II. 規制改革 體感指數가 낮은 理由

### 1. 規制改革關聯 法令整備에相當한 時日이 所要

- 규제개혁의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피부를 느끼기 위해서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이 모두 정비되어야 하나 이를 법령의 정비에 장기간(통상 6개월이상)이 소요
- 아울러, 일반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와 직결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규칙 등도 지방의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정비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

※ 5.1 현재 규제개혁관련 정비대상 법률 총 344개 중 294개 법률(85.4%)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시행령·시행규칙은 총 932개 중 639개(68.6%)의 정비가 완료

## 2. 規制改革事案에 대한 一線公務員의 理解 및 認識不足

- 상당수의 규제개혁사안이 이미 정비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공무원이 변경된 법령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의 불만이 상존
- ※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법개정이 너무 빈번하여 일반국민은 물론 담당공무원도 개정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중앙일보, 4.29자)

## 3. 規制執行 一線公務員의 行態改善 未洽

- 규제개혁은 제도적 정비와 아울러 정비된 규제를 실제로 운용하는 일선 집행공무원의 행태가 변화되어야 개혁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으나
- 일선 공무원들의 경우, 규제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후 감사 등에 대비, 민원인에 대해 법규에 근거없는 관련 서류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4. 變更된 規制改革 事案에 대한 一般 國民들의 理解 不足

- 일부 규제개혁 사안의 경우, 법령 정비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즉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경과 후 시행되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나 언론보도후 즉시 시행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음.  
(예)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책임자에 대한 교육은 '99.1.8 청소년기본법 개정으로 이미 폐지되었으나 제반 여건조성을 위해 '99.7.18부터 시행예정인 바, 언론에서 이를 오해하여 불필요한 교육이 그대로 존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  
(99.3.12字 문화일보, "규제개혁 숨이 안된다" 제하 기사)
- 국민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선된 제도의 내용을 잘 몰라서 과거의 관행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며 담당공무원도 이를 그대로 집행함으로써 규제개혁 체감도 저하

## 5. 既存의 規制를 廢止해도 새로운 規制가 新設

- 기존의 규제를 폐지해도 이와 유사한 새로운 규제가 생겨서 당초 규제개혁의 취지를 구현할 수 없는 경우도 상당
  - (예) 주유소에 편의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하면서 동 편의점 사무실 면적 기준을 신설

## III. 現場中心의 規制改革 推進方案(案)

### 1. 規制改革 履行實態 常時 點檢體系 運營 強化

- 국무조정실과 중앙행정기관, 시·도 등 합동으로 상시 점검단 인력 pool을 구성하여 매 2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

<주요 점검사항(예시)>

- 법령 제·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지침, 고시 등의 후속조치가 당초 규제 개혁의 취지와 내용에 맞는지 여부
-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법령 미근거 규제 발굴
-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신설·강화규제 조사
- 폐지·개선된 규제의 내용에 대한 자체교육, 행정집행 편람(매뉴얼) 작성 등 집행실태

※ 점검시의 대상기관 및 중점점검 항목은 수시로 구체적으로 설정

- 점검결과 부진사항 등은 즉시 시정하고 관계자 문책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모범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 조치를 강구하고 이를 전 공무원 사회에 홍보하여 개혁분위기 지속 확산

## 2. 國民提案 및 不便申告에 대한 還流體系 活性化

- 전체 중앙행정기관 및 각 시·군·구별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규제 신고센타를 활성화하여 규제개혁 성과의 환류체계를 강화
  - 각급 행정기관에 접수된 규제개혁 제안은 차상급 중간기관을 거치지 않고 즉시 규제개혁위원회로 송부토록 제도화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
- 아울러,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시에도 규제개혁관련 민원 및 제안 사항을 지속적으로 수집·발굴하여 적극 반영

## 3. 規制改革關聯 教育의 內實化

- 일선 행정기관의 규제담당 공무원 및 일반 집행공무원들의 인식과 행태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개혁관련 교육을 내실화
  - 중앙행정기관 및 각급 지방자치단체별로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장교육을 실시, 규제개혁의 당위성, 개혁방안, 개혁내용 등을 숙지토록함으로써 지속적인 개혁추진과 함께 개혁성과를 조기 확산
- ※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및 전문위원을 강사로 적극 활용
  - 또한, 상시 점검 및 현장조사결과, 규제집행공무원의 행태개선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큰 일선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수시로 특별 교육을 실시
- 아울러, 각급 공무원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규제개혁관련 강좌를 신설·보강토록 함으로써 분야별 규제개혁 사항 등을 교육하고 공무원의 행태개선을 유도
- 규제개혁관련 법령의 정비가 확정되면 업무(기능)별 편람을 즉시 개정, 이를 담당 공무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

#### 4. 對國民 弘報의 積極 推進

-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매월 「달라지는 것들」을 국민들에게 집중 홍보하되, 시행시기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최소화
  - 특히, 이와 관련하여 언론으로부터 최대한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경주
- ※ 출입기자단, 언론사별 기획취재팀과 간담회 개최 등
- 아울러, 지금과 같은 규제개혁 실적의 일방적 단순홍보에서 벗어나 국민으로부터 직접 관심을 유도하고 이를 해결해 주는 쌍방적 적극 홍보전략을 구사
  - 이해관계 단체와의 좌담회·토론회 개최 등

#### 5. 規制改革 輿論調查 實施

- 규제개혁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동안의 개혁실적을 분석·점검하고 향후 규제개혁 업무 추진에 반영

## IV. '99 規制改革의 持續的 推進

### 1. 殘存規制의 持續 整備

- 폐지규제 5,000여건을 제외한 나머지 규제를 대상으로 「존치불가피 규제」와 「정비대상규제」로 분류
  - 국제협약이행, 환경보호, 안전유지 등을 위해 존치가 불가피한 규제는 규제의 품질개선방안을 강구하고
  - 여타 정비대상규제는 폐지·개선 등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99년 중 재정비
- ※ 이를 위해 분야별 잔존규제에 대해 관련 민간 및 공공전문연구기관에 검토의뢰 및 지침시달 기완료('99.4.9)
- 중앙일보 등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사항, 기타 개선내용에 이의가 제기되는 사항에 대하여도 잔존규제 정비시 추가 검토할 예정

### 2. 新設·強化規制의 嚴格한 審查

- 향후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보다 철저한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신설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
  -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발전을 위한 상세한 지침을 개발하고 각 부처 규제담당관에 대한 교육을 병행 추진
- 신설·강화심사시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하여는 일몰제 적용확대를 적극 추진
- 특히, 폐지 또는 개선했던 규제가 다시 신설·강화됨으로써 당초 규제개혁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신설·강화규제를 철저히 검토

## 規制改革 關聯 新聞報道 內容 및 措置計劃

### □ 규제개혁이 미흡하다고 한 분야

△ 규제수준, 규제방법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은 금년 잔존 규제 정비시 집중검토

-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보고받는 중소기업 대출현황, 산업별 대출현황 등 17건

△ '98년 규제정비 계획시 개혁된 사안은 당분간 운영후 재검토

- 골프장내에 설치 허용되는 숙박업소 범위 등 3건

△ 검토결과 존치 운영이 불가피한 규제

- 투자신탁회사에 대한 겸직금지, 자산운용 제한 등 2건

### □ 규제개혁과 관련한 보완대책 미흡으로 규제개혁 성과가 미흡한 내용은 관련제도를 보완도록 조치

- 교사 퇴직후 1년이내 재임용금지 폐지, 상품권법 폐지 등 4건

### □ 규제개혁 내용에 대한 일선공무원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민원 처리가 부적절한 내용은 교육강화 및 점검강화

- 자동차 등록시 이미 폐지된 완성검사증 요구,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과다 등 2건

- 사실오인 및 규제정비는 확정되었으나 법령개정중인 사안 또는 미시행사항에 대한 지적은 신문사에 사실통보
  - LPG차량제조회사의 가스시설 시공업 등록 폐지('99.7.1부터 시행), 송금시 납부세액 확인서 징구 사례 등 7건
- 법령미근거 규제운영 또는 법령정비 미조치사항은 필요시 근거 마련 등 조치토록 해당기관에 통보
  - 아파트사업 승인시 법에 근거없이 각종 조건부여, 판매시설 면적제한 폐지 등 3건
- 기타 규제와 직접 관련되지 않거나 행정규제기본법 적용제외 대상은 관련기관 업무처리시 참고토록 통보
  - 수질검사 관련 중복단속, 민원처리 부적정 등 3건
  - 사법부 소관 법무사 수임수수료 관련 내용 1건